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10. 5

다. 상 정 일 자 : 2004. 10. 11

(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길중

나. 제안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세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보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서류의 송달을 교부 및 등기우편으로 하던 것을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 2 제3항)
-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던 것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개정(안 제21조)
-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의 100의2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3항)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4항)
- 주행세의 세율을 “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
(안 제39조의 2 제1항)
-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방법을 군수에게 영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함.
(안 제17조 제1항,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세조례를 지방세법에

일치되게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상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결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각호에서”를 “각호1에서”로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1조 제4항중 “100분의20을 가산한”을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으로 한다.

제39조의2 제1항중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한다.

제97조 제1항중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p>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 <p>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 ----- ----- ----- ----- --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p> |
| <p>제39조의2(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②생략</p> | <p>제39조의2(세율)①----- -----1000분의 175 ----- ②(현행과 같음)</p> |
| <p>제97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 <p>제97조(납기)①----- ----- 군수에게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 ----- -----군수에게 영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